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안전한 납품대금 수취를 위한

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 방안

2026. 11. 2.

금 융 위 원 회

금 융 감 독 원

Ⅰ. 현황 및 평가

□ **중소기업**은 주로 **대기업·중견기업**의 **공급망(Supply Chain)**에 참여하여 **물품·용역**을 **납품**하고, **현금·외상매출채권·어음** 등으로 **납품대금** 수취

□ **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**(이하 '외담대')은 납품대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**주요 조기 현금화 수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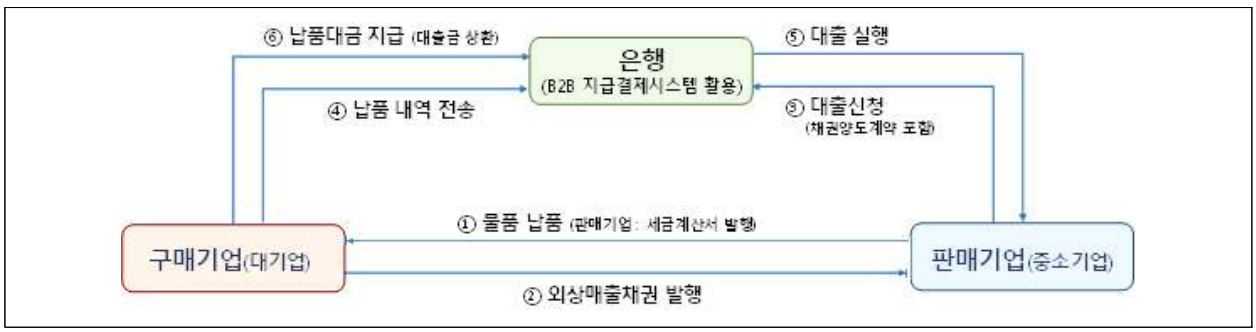
<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주요개념>

- **(외상매출채권)** 판매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이후, 구매기업이 거래은행 및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판매기업에게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(최장 90일 만기)
- **(외담대)**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

○ '25년 **외상매출채권 발행액**은 **527조원**, **외담대 취급액**은 **56조원 수준**

○ 특히, **외담대 이용차주**(판매기업) 중 **97% 이상**은 **중소기업·소상공인**

<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구조도>



□ **실태조사**(중기중앙회)에 따르면 **중소기업**은 원자재 가격 상승, 판매부진 등과 함께 '**판매대금 회수지연**'을 대표적인 **자금애로 원인**으로 지적

□ 아울러, 외담대 취급시 여전히 **판매기업**에 대한 **상환청구권***이 **부여**되는 경우가 많아 **구매기업 부도위험**이 **판매기업**에 **전가**되는 문제 지속

*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변제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➡ **중소기업**이 **납품대금**을 **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**할 수 있도록 **관계기관 TF 운영**(은행권, 금결원 등) 등을 통해 **외담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**

Ⅱ.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방안

1. 정산주기 및 대출만기 단축: 조기현금화 117조원, 이자비용 363억원 경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**상생협력법** 등에 따르면 **납품대금 정산주기**는 **60일**이 **원칙**이며, 60일 초과시 **구매기업**에게 **지연이자 지급의무**(연 15.5%) 등 **존재**

* (상생법 §22)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물품 등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최단기간으로 설정
(하도급법 §13)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
* (상생법 §22③, 하도급법 §13⑧) 60일 초과기간에 대해 일정수준의 지연이자 지급해야 함

□ 다만, 일부 **외상매출채권** 및 **외담대** 만기는 **60일보다 길게 설정**되어 (최대 90일) **단기결제성 금융수단**이라는 **도입취지**와 **괴리**되는 측면

* 단, 외상매출채권 정산만기 등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, 상생협력법, 하도급법 등을 적용받는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게 별도로 지연이자 등 지급(미지급시 처벌)

<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현황('25년중)>

(단위 : 조원, %)	1~30일		31~60일		61~90일		합계	
외상매출채권	261.7	(49.6)	148.9	(28.2)	**116.7**	**(22.1)**	527.3	(100.0)
외담대	17.5	(31.0)	29.4	(52.2)	**9.4**	**(16.8)**	56.3	(100.0)

나. 개선방안

□ 법 취지 등을 감안, **판매기업**이 **납품대금**을 신속히 **수취·현금화**할 수 있도록 **외상매출채권** 및 **외담대 만기**를 **60일 이내***로 **단축('27.2.1일~)**

※ 외상채권·외담대 최장만기 단축추이: ~'19.5.29. **180일** → ~'20.5.29. 150일 → ~'21.5.29. 120일 → '21.5.30.~**90일**

○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**상생채권*** **만기**도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

*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에 근거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기업에 발행하는 매출채권으로, 동 채권을 담보로 2·3차 이하 판매기업도 대출받을 수 있음

※ 상생채권도 동 제도개선 방안 시행시기('27.2.1)에 맞추어 단축 예정

<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효과(추정)>

◈ 외상매출채권 **조기현금화** 규모 : 연간 **최대 117조원** (기존 정산주기 中 60~90일 결제분)

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(외담대) **이용기업 이자경감** : 연간 **최대 363억원*** **경감**

* '25년중 외담대 취급액(60~90일) 9.4조원 × 평균금리 4.68% * 30일/365일

2.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: 보증채무 연 26.9조원 경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**외담대**는 **납품대금**을 **조기**에 **현금화**하는 주요 수단이나,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%는 납품한 **판매기업**에 대하여 **상환청구권***을 설정

*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변제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<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취급 현황('25년중, 만건, 조원)>

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		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		외담대 합계	
취급건수(비중)	취급금액(비중)	취급건수(비중)	취급금액(비중)	취급건수(비중)	취급금액(비중)
46.3(65.6%)	**26.9**(47.8%)	24.3(34.4%)	29.4(52.2%)	**70.6**(100%)	**56.3**(100%)

□ **외담대 실질 상환주체**는 판매기업이 아닌 **'구매기업'**이나, **은행의 리스크 관리* 차원**에서 판매기업이 **상환청구권**을 **부담**

* 은행 내규상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상환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으나,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요구

○ 일부 은행은 외담대의 상환주체인 **'구매기업'**이 **판매기업**에 대한 **상환청구권 부과 여부**를 **결정***하는 구조로 운용

* 은행은 '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'를 판매기업 익스포져로 관리하므로 구매기업에 유리

나. 개선방안

□ 은행의 외담대 취급시 **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 폐지**('27.1.1일~)

* 기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도 '27.1월 이후 만기도래·갱신시 상환청구권 폐지

○ 다만, **판매기업**이 **확인서 제출**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**상환청구권 부여**를 희망하는 경우 **제한적으로 허용**

* (예) 판매기업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우수하여 대출 취급조건(금리, 한도 등)에서 유리한 경우

<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효과(추정)>

◈ 상환청구권 폐지시 **46.3만건, 26.9조원**('25년기준)의 **보증채무 부담 경감** 예상

- (홈플러스, '25.3월) 회생신청 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약 310억원(220개사) 변제의무 발생
- (태영건설, '23.12월) 워크아웃 신청 이후 외담대 잔액 451억원에 대한 협력업체 상환우려 등 발생

3. 외담대 조기상환시 이자 환급대상 정상화: 이자비용 83억원 경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은행은 외담대 취급시 **만기까지의 이자**를 **판매기업**으로부터 **선취**

□ 구매기업이 **외담대 조기상환**시 일부 은행은 **판매기업***에 **선취이자**를 **환급**하나, 일부는 **구매기업****에 **환급** ☞ 은행별 **이자 환급대상 상이**

* 판매기업이 부담한 이자이므로, 판매기업에게 환급한다는 입장
** 구매기업이 조기에 상환하였으므로, 선취이자도 구매기업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입장

○ 은행이 **구매기업에게 선취이자**를 **환급**하는 경우 **판매기업의 실질 이자부담**이 커지며, 구매기업이 이를 **악용***할 가능성도 존재

* 구매기업 환급방식의 경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장기로 발행하여 이자를 판매기업에게 부담시킨 후 외담대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수익을 수취할 유인이 존재

나. 개선방안

□ 조기상환에 따른 **선취이자 환급대상**을 **판매기업**으로 통일('27.1.1일~)

<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효과(추정)>

◈ **중도상환시 이자 환급대상**을 **판매기업**으로 **통일**하는 경우 **'25년 기준 구매기업**에게 **지급**되던 **이자 지급액 약 83억원**이 **판매기업**에게 **지급**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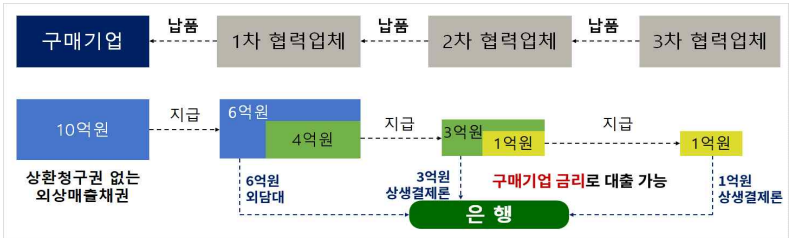
4. 상생결제론 활성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'**상생결제론**'은 **판매기업**(2차 이하)이 **최상단 구매기업**의 **신용**을 바탕으로 **외상매출채권**을 **조기 현금화**할 수 있도록 하는 **대출상품***

* 「상생협력법」상 상생결제제도(중기부 주관)를 기반으로 하며, 현재 12개 은행이 취급
→ 2차 이하 협력업체도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

[참고] 상생결제 거래구조



□ 다만, **상생결제론 대상 구매기업 범위**(공공기관, 우량 대기업)가 일반 외담대 대비 **제한적**이어서 **상생결제론 이용 확대**에 **걸림돌**

※ ('25년) 상생결제론 규모 : 약 17.0조원 / 외담대 규모 : 약 56.3조원

나. 개선방안

□ 은행권 **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**를 **외담대 수준**까지 **단계적 확대***

* (現) 공공기관·우량대기업(AAA~A-) 제한 → (改) 외담대 대상범위 수준(예: 신용등급 BBB이상)

□ 이외에도 **상생결제 활성화** 위한 **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** 등 확대

< 상생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권 인센티브 확대방안(예) >

① 1차 협력업체의 하위 협력업체 지급목적 예치계좌 금리상향(하나, 농협 등)
② 상생결제제도 우수업체에 대한 일반대출 금리우대(국민 등)

Ⅳ. 향후 계획

□ 금융결제원 규정 개정,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**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**은 **'27.2.1일**, **나머지 사항**은 **'27.1.1일부터 시행**

〈외담대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 일정〉

추진과제	일정	담당기관
1.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: '27.2.1일 시행		
-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	~'26.11월	금융결제원, 은행연합회, 은행
- 약관·약정서 개정	~'26.12월	
-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, 對고객 안내	~'27.1말	
2. 불필요한 상환청구권 폐지 : '27.1.1일 시행		
- 약관·약정서 개정	~'26.11월	은행연합회, 은행
-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, 對고객 안내	~'26.12월	
3. 외담대 조기상환시 선취이자 환급 관행 정상화 : '27.1.1일 시행		
- 약관·약정서 개정	~'26.11월	은행연합회, 은행
-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, 對고객 안내	~'26.12월	
4. 상생결제론 활성화 : '27.1.1일 시행		
- 은행 내부규정·약관·약정서 개정	~'26.11월	은행연합회 대·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
- 예치금리 상향	~'26.12월	
- 기업·은행 영업점 대상 교육·홍보 강화	~'26.12월	